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1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1054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7. 9. 26.
판 결 선 고	2017. 11. 14.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redacted]시 [redacted]면 [redacted]리 654 외 1필지 6,684㎡의 지목변경에 관한 취득세 1,296,330원 및 농특세 110,590원 합계 1,406,920원(가산세 포함), 같은 리 654 지상 건물 2,940.53㎡의 신축에 관한 취득세 26,761,390원, 지방교육세 1,306,820원, 농특세 1,633,520원 합계 29,701,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4. 유기질 비료 생산 및 판매업 등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5. 28. [redacted]시 [redacted]면 [redacted]리 654 지상 건물 2,940.5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2013. 7.경 [redacted]시 [redacted]면 [redacted]리 654 외 1필지 6,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지목을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7. 12.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하여, 위 각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의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신청(이하 '이 사건 감면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1/2 감면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5. 10. 7.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5. 11. 4. 감면된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2016.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취득세 1,296,330원 및 농특세 110,590원 합계 1,406,920원(가산세 포함),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취득세 26,761,390원, 지방교육세 1,306,820원, 농특세 1,633,520원 합계 29,701,730원(가산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1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14.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유기질 비료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설비들을 설치하면서 이를 공장용도로 사용하여 왔는바,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농업회사법인인 원고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여 왔다.

설령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유기질 비료생산 및 판매업 등에 필요한 설비들을 설치하는 것이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당초 총 사업비를 30억 원으로 예정하여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 시설공사 과정에서 사업비가 당초 예정한 금액보다 2배 가까이 예상치 못하게 증가하게 되어 당초 예정하였던 설비공사의 완료시점이 늦어지게 되었던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은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1

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9조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취득한 목적이나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2, 3, 5, 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취득한 목적이나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설립 등기 당시 사업목적을 축산분뇨 수집운반업, 축산분뇨 처리업, 가축분뇨 시설관리업, 가축분뇨 자원화업, 유기질 비료 생산 및 판매업, 미생물생산 배영 및 판매업, 영농업,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로 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감면신청을 하면서 고유목적이용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를 유기질 비료 제조·판매 목적으로 2013. 7.부터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는 2015. 10. 7. 이 사건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출장일 현재 원고측이 지하에 약간의 비료 원료가 있다고 하였으나 운영으로는 볼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④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인 2015. 10. 27.에야 공장의 업종을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1

⑤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유기질 비료 생산 등에 필요한 시설이 일부 설치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그 취득한 목적이나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신청한 용도 내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정도, 사업자가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3. 5. 28.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2013. 7.경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5. 10. 27.에야 공장의 업종을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던 점, 원고는, 당초 총 사업비를 30억 원으로 예정하여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가축분뇨 자원화 등의 사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하게 사업비가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어 당초 예정하였던 설비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1

사의 완료시점이 늦어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신청한 용도 내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두

판사 박종환

판사 이영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1

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끝.